

#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관리지침

2016. 09. 20. 제정

2020. 10. 14. 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지침은 대한장애인당구협회 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. 지도자협의회운영 규정 제6조(구성)에 따라 지도자협의회 위원장(이하 ‘위원장’으로 한다)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)** 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장애인체육회”) 가맹단체회장선거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며, 필요에 따라 별도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3조 (선거사무관장)** 위원장 선거사무는 협회 사무국에서 관장한다.

## 제 2 장 위원장 선거관리

**제4조 (선거업무)** 협회 사무처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선거공고
2. 선거인 명부 확인 및 관리
3. 입후보 등록고지
4.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검토 및 조치
5. 선거운동의 제한, 정견발표에 관한 관리
6. 투표용지에 관한 업무
7. 선거(투·개표)에 관한 업무
8. 선거의 연기 및 재선거에 관한 업무
9.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
10. 공명선거에 관한 업무
11. 당선자 보고 및 선포
12. 선거지침에 관한 업무
13. 기타 선거 업무 제반 사항에 관한 업무

## 제 3 장 선거운영

**제5조 (선거일 등의 공고)** ① 선거일이 확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협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위원장 후보자 자격요건)** 지도자협의회운영규정 제6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여야 한다.

**제7조 (위원장 후보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 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 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
   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  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   - 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  6. 국회의원
  7. 삭제
  8. 삭제
  9. 삭제
  10. 삭제
- ② 위원장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.

**제8조 (위원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)** ①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제출처에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1. 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2. 이력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

② 협회 사무국은 위원장후보자를 후보자 등록부(별지 제4호 서식)에 등재한 후 접수증(별지 제5호 서식)을 교부한다.

③ 위원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에 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**제9조 (선거인명부 작성)** 협회 사무국은 위원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인 명부(별지 제7호 서식)를 비치하여야 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**제10조 (위원장 후보자 정견발표)** 위원장 후보자의 정견발표는 투표에 앞서 후보자 기호순서에 따라 발표하고 시간은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.

**제11조 (선거방법)**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  
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.  
③ 협회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.  
④ 전자투표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다.

**제12조 (투표용지)** ① 투표용지(별지 제8호 서식)는 협회에서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.  
②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“1, 2, 3”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.  
③ 시각장애인에게는 별도의 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할 수 있다.  
④ 제2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(접수) 순서에 의한다.

**제13조 (감표인 선정)** 투표 감표를 위한 감표인은 선거인단 중 3인으로 선정한다.

**제14조 (투표)** ① 선거인은 감표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.  
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

**제15조 (참관인 선정)** 각 후보자는 필요할 경우 개표 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 까지 협회 사무국에 등록(별지 제9호 서식) 할 수 있다.

**제16조 (무효투표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.

1.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.
2.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.
3.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.

4.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.
5. ○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.
6. ○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.
7.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.

**제17조 (위원장의 선출)**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회에 등록된 지도자의 직선제로 선출한다.

② 위원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, 유효투표중 다수의 득표를 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2.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3.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③ 삭제

**제18조 (선출무효)** 위원장은 선임 이후에도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해촉된다

**제19조 (개표결과 보고서 작성)** 감표자는 개표가 끝난 즉시 개표결과 보고서(별지 제10호 서식)를 작성 날인 후 협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0조 (위원장 당선인 공고)** 협회 사무처는 위원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 즉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위원장 당선인을 협회 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21조 (위원장 입후보자 선거활동 금지사항)**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.

1. 특정인의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,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
2.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
3.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
4. 기타 협회 공지한 사항

**제22조 (벌칙)** 협회는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법제·상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으며, 제재내용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한다.

부 칙 (2016. 09. 20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10. 14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공 고

대한장애인당구협회 제00대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 
공고합니다.

## 다 음

### 1.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후보자 등록

○ 년 월 일 시까지

### 2.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

○ 년 월 일 시

### 3.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

○ 일 시 : 년 월 일 시

○ 장소 :

년 월 일

대한장애인당구협회

회장 0 0 0

##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

- 성명 : (한자 : )
- 생년월일 :
- 주소 :
- 직업 :
- 연락처 : (자택 : ) (직장 : )  
(핸드폰 : )
- 이력사항 : 첨부(사진 포함)

상기 본인은 대한장애인당구협회 제00대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입후보자 : (인)

대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귀하

### [별지 제3호 서식]

## 제00대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후보자 등록부

일월전

[별지 제4호 서식]

## 제00대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후보자 접수대장

### [ 후 보 자 ]

- 성명 : (한자 : )  
○ 생년월일 :  
○ 주소 :  
○ 직업 (직위) :  
○ 접수일자 : 년 월 일  
○ 접수번호 :

상기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함.

확인자 : 대한장애인당구협회 (직위 ) (성명 ) (인)

———저———취———선—————

### 접수증

- 후보자 성명 : (한자 : )  
○ 생년월일 :  
○ 주소 :  
○ 직업 (직위) :  
○ 접수일자 : 년 월 일  
○ 접수번호 :

상기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한장애인당구협회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대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(인)

### [별지 제5호 서식]

## 제00대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

년 월 일 지도자협의회에서 선출하는 제00대 대한장애인당구협회  
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의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이를 공고합니다.

년 월 일

# 대한장애인당구협회

[별지 제6호 서식]

## 선 거 인 명 부

二〇一〇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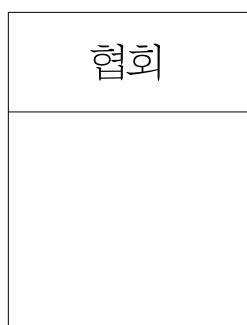
연번

제○○대 대한장애인당구협회

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 투표용지

감표인	
성명	서명

기호	1	2	3	4
후보자성명				
기표란				



[별지 제8호 서식]

## 개표 참관인 신고서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실시하는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참관인을 다음과  
같이 신고합니다.

1. 후보자 성명 :

2. 개표참관인 인적사항

번호	소 속	성 명	성별	생년월일	비고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고자 : (인)

대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귀하

[별지 제9호 서식]

## 개 표 결 과 보 고 서

제00대 대한장애인당구협회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 개표결과

기호	후보자 성명	득표수
		표
		표
		표
		표

년 월 일 실시한 제00대 대한장애인당구협회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의  
개표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감표자 : (인)

감표자 : (인)

대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귀하

[별지 제10호 서식]

## 제00대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당선인 공고

년 월 일 지도자협의회에서 실시한 제00대 대한장애인당구협회  
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당 선 인

- 성명 :
- 생년월일 :
- 직업 및 직위 :

년 월 일

대한장애인당구협회

[별지 제11호 서식]